

# COCOM 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전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송봉식 / 상공부 전자정책과 계장

## 1. 머리말

1984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협의는 1987년 9월 11일 한·미간에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었으며 1989년 3월 동 양해각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내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1989년 5월 11일부터 발효되게 됨에 따라서 상공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요령 및 절차 그리고 통제대상 품목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통제(안)을 작성, 1989년 9월에 한·미간의 COCOM 전문가 Technical Meeting을 한국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제도도입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1990년 3월 중에 미국에서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여 상공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 요령에 대한 공고를 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전자전기분야는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COCOM 회원국에서 예민하게 통제하는 품목이 많아 COCOM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업계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COCOM 제도의 개요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용계획 그리고 전자전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 2. COCOM 제도의 개요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에 관한 조정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는 1949년 미국의 주도로 창설된 비공식 협의 기구로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회원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적 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기술이 동 국가들에게 수출 또는 유출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동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COCOM의 모든 합의는 기본적으로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으로서 회원국을 구속하는데 지나지 않아 공산권 국가로 통제대상 품목이 유출되더라도 관련국이나 기업체에 대해 COCOM 회원국 공동의 법적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현재 COCOM은 정책결정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전혀 노출시키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수출통제 대상품목 리스트의 작성 및 검

토, 예외적 수출허가신청의 심의, 수출통제 활동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COM 회원국은 최초 설립 당시 미국 및 유럽의 6개국 등 7개국이었으나 그후 회원국이 증가되었고 1989년 4월에는 호주가 가입함으로써 현재는 17개국이며 COCOM은 NATO나 OECD 와는 아무런 공식관계가 없으나 회원국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NATO 회원국 15개국과(미국, 카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서독,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노르웨이, 프랑스)과 일본, 호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COCOM 회원국들이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COCOM 내의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각 회원국들은 수출통제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COCOM 통제품목 리스트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일반 전략물자 리스트(International Industrial List), 제 2부는 군수물자 리스트(International Munitions List), 제 3부는 핵 에너지 관련리스트(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로서 각각 121개, 24개, 24개 품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리스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개정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년 전체 리스트의 1/3을 재검토, 수정하여 오고 있다.

〈표〉 전자전기분야 COCOM List 현황

분류번호	품 목
1203	전기로
1205	전기화학 변환장치, 방사성기구
1206	전기아크장치
1388	반도체장비
1501	항해 및 방향탐지, 레이다 및 항공통신장비
1502	자외선방사, 적외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통신, 탐지혹은 추적장치
1510	해상이나 지상의 음향 또는 초음파 시스템
1514	펄스변조기, 펄스형성장치
1516	무선수신기
1517	무선송신기

분류번호	품 목
1518	무인, 유인, 우주선, 무기에 쓰이는 원격측정 및 원격조정장비
1519	전송장치와 측정 또는 시험장치
1520	무선통신 중계장비
1521	Solid State Amplifier
1526	광섬유, 케이블
1527	암호장치
1529	검사, 측정장비
1531	주파수 음성합성장치
1532	선형 및 각형 측정시스템
1533	신호분석기, 스펙트럼분석기
1534	마이크로밀도계
1537	M / W 장비
1541	음극선관
1542	냉음극선관
1544	다이오드
1545	트랜지스터
1547	싸이리스터
1548	광센서
1549	광증배관
1553	후레쉬, 방전형 X선 시스템
1555	전자관
1556	광소자와 광튜브소자
1558	전자진공관
1559	세라믹 금속구조의 수소 / 수소 동위 원소 열음극 방전관
1560	세라믹 콘덴서, 탄탈륨콘덴서
1561	전자파 휴수체
1564	전자부품의 Module, 조립품, PCB, IC
1565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
1566	소프트웨어
1567	전자교환기
1568	변환기
1570	열전재료
1571	자기계, 자기시스템
1572	기록매체, 기록재생장치
1573	초전도자석
1574	전자기감지, 증폭, 전류스위치, 주파수선택기
1584	오실로스코프
1586	탄성파소자
1587	석영결정
1588	첨정석, 석류석 결정구조, 박막소자
1757	단결정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
1767	광섬유 모체

COCOM은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통제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통제대상지역(COCOM Proscribed Destination)으로서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과 알바니아, 중공, 몽고, 북한, 베트남 등 12개국, 각 회원국이 국가차원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지역으로는 아프가니стан, 쿠바 등 2개국이 있다.

전후 COCOM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과 원조정책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COCOM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대말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확산과 국제교역상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의 변화, 소련의 서방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등으로 COCOM은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대소 군사력 우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80년대 들어와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COCOM 비회원국들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을 통한 전략물자 및 기술이 소련으로 우회 유출될 가능성이 큰 주요 교역대상국을 선정, COCOM 회원국에 준하는 통제 체제를 확립토록 하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를 제3국 협력선도(Third-Country Initiative)라고 부르며 협정체결 대상국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인도,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파키스탄, 남아공화국 이스라엘 등 12개국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양국간 협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이 있으며 협의 진행중인 국가는 브라질, 대만, 홍콩 등이고 독자적으로 법을 마련, 통제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COCOM 체제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잠재적 적성국가에 대한 민감한 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동서간 화해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소련이 서방의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COCOM의 기본적 성격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다만, 동서간 화해움직임과 COCOM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획득 가능성(Foreign Availability)의 증대에 따라 그동안 규제되어 왔던 저급 기술수준의 품목들이 통제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제도 운용계획

상공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외무역법에 의거 전략물자의 수출입 요령을 상공부장관의 별도 공고로 하여 시행코자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략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수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기술만의 수출인 경우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과기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는 14개 통제대상 공산국가, COCOM 회원국 및 MOU 체결국가 등 COCOM 제도 도입 국가, 그 이외의 국가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통제정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14개 통제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되나 품목 및 국가별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게 되며 COCOM제도 도입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상대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제수입증명서(IC,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및 통관증명서(DV, Delivery Verification)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나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IC, DV가 면제되는 등 타지역에 대한 수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게 되며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부가 발행하는 End User Certificate 등을 정수하는 등 보다 통제를 강화하여 14개 공산국가에 대해 우회수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COCOM제도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방향 협의를 위해 상공부내에 국방부, 과기처, 관세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문자 수출통제 협의회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 4. COCOM제도 시행시 전자전기분야에 미치는 영향

전자전기분야의 통제대상 품목은 앞의 표와 같이 유·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계측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단결정 실리콘, 자기기록매체, 광섬유 및 케이블, 전공로 등이 해당되어 International Industrial List 총 121개 중 52개가 해당되나 통제대상 품목별로 세부사양에 의거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통제대상 분야의 대공산권 수출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공산권과의 교역 확대가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자유진영에 대한 수출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장해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첨단제품의 대공산권 수출에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를 확고히 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이 용이해지고 반도체 생산장비 등 첨단 기자재와 CAD, CAM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자재와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

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에 의거 5K 국가로 분류되어 17개 COCOM 회원국과 미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간에 무역거래가 보다 자유스러워지는 이점도 있다.

#### 5 맷는말

미국정부는 도시바기계가 소련에 잠수함용 프로펠러 가공을 위한 로보트 및 프로그램의 수출에 대해 미국 종합무역법 2443조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한것 같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시 위반하였을 경우 유사한 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공부에서는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전반에 대하여 많은 홍보와 국내 전자전기업체가 생산하는 품목별, 규격별로 COCOM 통제 대상품목 여부에 대한 작업을 통하여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으로 통제대상품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COCOM 제도 시행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상공부 상역국 내에 무역협력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COCOM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 제도 시행시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아울러 업계 자체의 내부 통제제도(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COCOM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